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562호

2020. 1. 10. (금)



서울특별시

목 차

◆ 정 정

서울특별시규칙 제4313호 및 서울특별시규칙 제4314호 정정	2
--	---

정 정

◆ [정 정]

서울특별시규칙 제4313호 및 서울특별시규칙 제4314호 정정

서울시보 제3559호(2019.12.31.)에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」 공포안이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합니다.

2020년 1월 10일
서울특별시장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313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31일
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

— 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 —

1. 개정이유

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서간 사무분장 및 직위 등을 조정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업무가 종료된 전국체전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올림픽추진과를 신설함(제17조의3)
- 나. 실·본부·국별 사무분장 사항 등을 조정·정비함(제9조, 제10조, 제13조, 제17조의2, 제23조, 제24조 및 별표 2)
 - (1)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직렬을 기술서기관 → 서기관·기술서기관으로 확대.
 - (2)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: 평가담당관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

- (3)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: 교통분야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소관사무로 신설
- (4)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: 분장사무 조정
- ▶ 신설: ①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·시행 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③ 평생교육 기반 확충·운영 ④ 평생교육기관 상호협력·교류
 - ▶ 삭제: 서울자유시민대학 관련 사항(본부, 분교 운영 등)
 - ※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 예정
- (5)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: 서울로7017 운영·관리를 직접 관리 →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함.
- (6)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: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- (7) 미근 119안전센터를 북아현 119안전센터로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여 개편함. ※ 관할구역 변동은 없음
- 다. 친환경급식과장 및 수도연구부장의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함(제17조의2및 제78조)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빅데이터담당관·정보시스템담당관·공간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빅데이터담당관·정보시스템담당관·공간정보담당관,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, 제2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평가협업담당관”을 각각 “평가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7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.

8.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5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교통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
제1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.

제17조의2제4항(중전의 제5항)제5호 중 “지도·감독·평가”를 “지도·감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11.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12.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3. 평생교육기관 상호협력·교류에 관한 사항
제17조의3제1항 중 “전국체전기획과”를 “올림픽추진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국체전기
획과장”을 “올림픽추진과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⑦ 올림픽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올림픽 유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2. 올림픽 유치위원회,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3. 올림픽 유치 홍보 및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
 4. IOC 올림픽 유치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
 5. 올림픽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6. 국제 스포츠 기구 서울 유치,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참여에 관한 사항
 7. 남북 공동유치 관련 대내·외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
 8. 올림픽 경기장 신축 및 개·보수, SOC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
 9. 올림픽 교통·수송·숙박·환경관리 등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10. 소년체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11. 소년체전 종합상황실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12. 소년체전 홍보에 관한 사항
 13. 소년체전 대회 종목별 경기장 공인·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
 14. 소년체전 관내 및 타 시·도 경기장 시설 확충,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
 15. 소년체전 경기장 내외 전기, 통신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16. 소년체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17. 소년체전 교통, 수송, 숙박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18. 소년체전 경기장 환경관리(청소 및 위생대책 등)에 관한 사항
 19. 전국장애학생체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3조제3항제14호 중 “관리”를 “위탁관리”로 한다.

제24조제8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

제78조제2항 중 “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”을 “미래전략연구센터장”으로 한다.

별표 2 서대문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대문 소방서	연 회 119안전센터	서대문구 연희로 182 (연희동)	서대문구중 : 봉원동, 신촌동, 대신동, 대현동, 창천 동, 연희동
	북가좌 119안전센터	서대문구 증가로 242 (북가좌동)	서대문구중 : 북가좌1·2동, 남가좌1·2동
	홍 은 119안전센터	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3 (홍은동)	서대문구중 : 홍은동, 홍제동
	북아현 119안전센터	서대문구 북아현로 37 (북아현동)	서대문구중 : 현저동, 냉천동, 천연동, 옥천동, 영천 동, 충정로 2·3가동, 합동, 미근동, 북아현 1~3동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) 제17조의2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원의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평가협업담당관”을 “평가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3항 중 “평가협업담당관”을 “평가담당관”으로 한다.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314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대응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(88명)

(1) 관리운영, 위생직 등 미충원 직렬과 업무 감소 분야 등 정원 감축 (△88)

(2) '32년 하계 올림픽 유치, 미세먼지 대응 체계강화,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, 첨단수사 지원체계 구축 등 핵심사업 인력 보장을 위한 정원 조정(+88)

나.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직급 상계 조정 및 정원 이체 사항 반영(23명)

(1) 행정수요의 다변화 등 직무범위 확장에 따른 직급 상계조정: 행정7급 △20 → 행정6급 +20

(2) 업무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정원 이관: 본청 △3 → 사업소 +2, 직속기관 +1

다. 관리운영직군 퇴직 등에 따른 직렬 및 직급 조정(57명)

- 7급 △1, 8급 △54, 9급 △2 → 6급 +2, 7급 +2, 8급 +7, 9급 +46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계	18,561	4,581	333	8,052	5,357	238
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계	10,536	4,393	324	393	5,188	238
--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 4급 기술서기관란,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술서기관	60	21			39	
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	71	51			15	5

같은 표 5급 소계란, 약무란, 시설란, 행정또는사회복지란, 행정또는학예연구관란, 환경또는환경연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행정·보건또는보건연구관란을 삭제한다.

5급 소계	1,398	900	45	55	350	48
약무	8	6			2	
시설	189	117			71	1
행정또는사회복지	10	10				
행정또는학예연구관	14	6			8	
환경또는환경연구관	2			2		

같은 표 5급 직렬란 중 행정·보건또는환경란 다음에 행정·보건또는약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행정·보건또는약무	1	1				
-----------	---	---	--	--	--	--

같은 표 6급 소계란, 행정란, 사회복지란, 전산란, 공업란, 녹지란, 보건란, 시설란, 방송통신란, 위생란, 행정·공업또는시설란, 환경또는환경연구사란, 농업·수의또는농업연구사·수의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6급 소계	3,422	1,772	104	105	1,330	113
행정	1,282	806	80	40	277	79
사회복지	23	20			3	
전산	87	62	3	3	16	3
공업	346	112	6	4	222	2
녹지	66	33			33	

보건	22	22				
시설	550	298	2	2	230	18
방송통신	65	31	2	4	28	
위생	18	9		1	8	
행정·공업또는시설	88	77			6	5
환경또는환경연구소	4			4		
농업·수의또는농업연구 사·수의연구소	14			14		

같은 표 6급 직렬란 중 보건또는환경란 다음에 보건또는약무란, 농업·수의또는보건란 다음에 농업또는수의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보건또는약무	1	1				
농업또는수의	1	1				

같은 표 7급 소계란, 행정란, 사회복지란, 사서란, 공업란, 농업란, 수의란, 보건란, 환경란, 시설란, 방송통신란, 위생란, 행정또는학예연구소란, 행정·공업또는시설란, 화공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7급 소계	3,383	1,300	101	143	1,777	63
행정	1,257	669	71	59	412	46
사회복지	35	20	1		13	1
사서	21		1	8	12	
공업	410	30	5	12	361	2
농업	6	2			4	
수의	10	6			4	
보건	19	17			2	
환경	40	9		18	13	
시설	505	208	1	5	283	8
방송통신	61	25	3	12	21	
위생	15	6		2	7	
행정또는학예연구소	20	3			17	
행정·공업또는시설	44	40				4
화공운영	2				2	

같은 표 8급 소계란, 행정란, 방호란, 공업란, 농업란, 녹지란, 의료기술란, 환경란, 위생란, 간호조무란, 시설관리란, 운전란, 건축운영란, 통신운영란, 전기운영란, 기계운영란, 농림운영란,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8급 소계	1,579	195	48	71	1,262	3
행정	196	34	15	16	130	1
방호	94	30	6	3	55	
공업	111	8	1	5	97	
농업	4				4	
녹지	18				18	
의료기술	47	1			46	
환경	21	3			18	
위생	12	2	1		9	
간호조무	4				4	
시설관리	130	3			127	
운전	110	19	3	12	76	
건축운영	2				2	
통신운영	6	4			2	
전기운영	79	1	1		77	
기계운영	184	2	2	1	179	
농림운영	13			2	11	
사무운영	184	48	13	18	105	2

같은 표 9급 소계란, 행정란, 공업란, 녹지란, 의료기술란, 시설란, 간호조무란,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9급 소계	335	5	4	5	321	
행정	36	1	1	1	33	
공업	66				66	
녹지	6				6	
의료기술	28				28	
시설	11				11	
간호조무	48				48	
기계운영	2				2	

같은 표 9급 직렬란 중 운전란 다음에 시설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시설관리	63			1	62	
------	----	--	--	---	----	--

부칙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